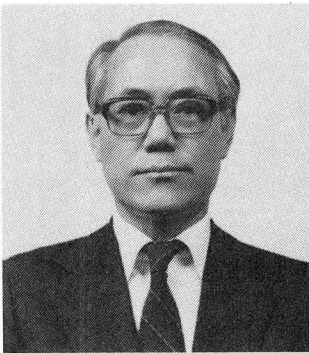


# 화재보험에서의 화재의 의의



孫 珠 瓚  
(연세대 교수)

## 1. 화재의 의의에 관한 입법에

화재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683조에 의하면,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동법 제681조는 보험자가 화재의 소망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화재보험보통약관 제1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화재(벼락을 포함)로 입은 일정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규정하고, 보상할 손해로서 ① 화재에 따른 손해 ②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및 ③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동안에 생긴 위의 ① 및 ②의 손해를 포함)의 세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이나 약관은 「화재」의 의의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독일보험계약법(VVG)의 화재보험사고에 관한 제82조 및 화재보험에서의 손해의 범위에 관한 제83조, 스위스보험계약법의 화재보험의 보상액에 관한 제63조, 프랑스의 신보험법전의 화재보험자의 책임의 범위에 관한 L. 122-1조 및 화재보험에서의 손해의 범위에 관한 L. 122-2조(각각 1930년의 구 보험계약법 40조 및 41조와 동일), 1958년의 오스트리아보험계약법의 화재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제82조, 덴마크보험계약법의 화재보험사고에 관한 제79조등에서도 화재보험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화재」의 정의에 관하여는 역시 언급이 없다.

유일하게 1962년 스웨덴보험계약법만이 제79조에서 「화재의 의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화재보험계약에서 화재라 함은 화력의 독립연소를 뜻한다. 보험자는 연소를 수반하지 아니한 화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손해는 이를 화재로 인한 손해로 보지 아니한다.

가. 램프·요리용의 스토브 또는 난로에서 생기는 연기 또는 매연으로 인한 손해.

나. 취사장에서 생기는 화력 또는 깃연의 경우 낙하한 화력으로 카펫이나 의류를 타게 함으로써 생긴 손해.

다. 물건 그 자체에 화재가 생기지 아니하여도 가열된 목적물이 다른 목적물을 연소시키지 아니하고 생긴 손해.

② 화재가 생긴 목적물의 열 또는 연기가 화재가 생기지 아니한 다른 목적물을 타게 하거나 그 밖의 상태에서 손해를 생기게 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상할 책임이 있다.

이상의 스웨덴법규정은 보기 드문 입법예에 속하며, 화재의 개념규정 자체는 간단하나, 비교적 상세한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 개념이 보완되는 것으로 보아진다.

이와 같은 화재의 개념규정이 없는 우리 상법이나 약관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보험자의 책임을 논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화재의 의의에 관한 국내학설

화재보험에서의 화재의 의의에 관하여는 그 설명이 구구하다. 「화력의 고유한 연소작용」을 말하는 것이나, 「열·광의 작용·낙뇌·폭발등으로 인한 파괴작용은 그 자체가 화재는 아니라고」 하는 견해를 비롯하여, 「보통의 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한 연소력을 가진 연소작용으로 인한 재해」라고 하는 설,<sup>2)</sup> 「일반사회통념에 따라 화재라고 인정할 수 있는 성질과 규모를 가진 화력의 연소작용」이라고 하는 설<sup>3)</sup> 등이 있다.

이상 세가지 개념설명의 어느 것도 모두 사회통념적·추상적이며,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기 위하여는 다시 개념정립이 필요하게 된다.

다음에 주요 외국의 개념설정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 3. 외국에서의 화재의 의의

① 서독의 현행 화재보험보통약관(AFB)은 화재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제1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보험자는 다음의 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해에 대하여 보험보호를 부여한다. a) 화재(Brand) 및 낙뇌(Blitzschlag), b) 등화용가스(Leuchtgas)(용도불문) 조명기구의 폭발, 주택 및 가재보험(Versicherungen von Wohngebäuden und Hausrat) 경우의 모든 종류의 폭발.

나. 화재(Brand)라 함은 어떠한 일정한 火床(Herd) 없이 발생한 불(Feuer) 또는 그것을 떠나서 자력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불(손해불, Schadenfeuer)을 가리킨다. 화재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서 손해가 생긴 경우(Sengschäden)(초손) 및 유용한 불(Nutzfeuer), 가공 또는 기타의 목적(예컨대 훈증=Räuchern·배소=Rösten·비등=Kochen·다리미질=Plätten 등)을 위하여 놓이게 됨으로써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보호가 되지 아니한다.

다. 보험자는 보험 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그것이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책임을 진다. a) 제1항의 손해사고의 직접적인 작용으로 인한 것인 때, b) (생략), c) 소방·손괴 또는 철거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

라. 보험자는 제1항의 손해사고의 어느 하나로 인하여 멸실된 보험 목적물의 가액을 보상한다. (이하 5항 내지 7항은 생략).」

이 약관에서는 「화재」(Brand)와 「불」(Feuer)을 구별하고 있으며, 화재의 의의에 관한 2항1문의 규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첫째 화재는 불이어야 하므로, 불(발화)로 인한 것이 아닌, 가열·연기·증기·온수등으로 인한 손해는 화재보험에 의한 보상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즉 발화·점화(Ignition)가 화재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 둘째 이 약관에서 “불”이란 일정한 화상(Herd) 없이 발생한 것 또는 그것을 떠난 불이어야 하며, 이러한 것을 약관에서는 “손해불”(Schadenfeuer)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그 불이 원래 있을 곳(화상)에 있었는가의 여하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불, 이른바 유용한 불(Nutzfeuer)(Friendly Fire, Domestic Fire)(예컨대 난방용 또는 주방에서의 불등)은 있을 곳에 있는 것이므로 화재의 개념을 구성하지 않는다. 또 여기서 불은 있을 곳을 떠난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를테면 담배불이 방바닥에 떨어져서 연소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도 이 약관에서 화재가 된다. 셋째 이 약관에서 “불”은 자력으로(Aus Eigener Kraft) 확대될 수 있는 것이라야 “화재”가 되므로 담배불이나 성냥불이 마루바닥에 떨어진 경우에도 독립한 연소력을 갖지못하는 정도이면, 여기서 화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것은 당연한 요소라 하겠다.<sup>4)</sup>

스위스의 Bern대학의 보험법교수 Koenig의 스위스보험법의 저서에서도 화재보험에서의 화재 개념을 위와 같이 설명하고, 이른바 사실상의 「손해불」(Ein Wirklic-

hes Schadenfeuer=적절한 용어가 없어서 이렇게 직역하기로 한다)만이 「화재」가 되고, 「유익한 불」(Das Nutzfeuer)은 「화재」가 되지 않으며, 또 그것은 「화상」(Herd)을 떠난 것이라야 하므로 예컨대 난로에서 보험 목적물이 타버린 경우는 화재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고 한다. 보험의 목적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난로속에 던진 경우도 같다.<sup>5)</sup>

② 판례국가인 영국에서는 Harris V. Poland 사건을 계기로 화재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 그 이전에는 예컨대 Austin V. Drew 사건<sup>6)</sup>에서는 불이 연돌밖으로 나오고 어떤 물건이 소실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상책임이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보상책임이 없다는 뜻을 판시함으로써 독일의 약관에서와 같이 불(Fire)이 있어야 할 장소를 떠났을 때를 화재의 요건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Harris V. Poland 사건<sup>7)</sup>에서는 피보험자가 보석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실내의 난로에 넣어두고, 뒤에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 스토브에 점화하여 보석이 손상된 사건에 관하여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앞서 본 스위스의 Koenig 교수의 所說과는 대조적이다. 이 사건에서 Atkinson 판사는 우연한 화재(Fortuitous Fire)와 고의에 의한 화재(Intended Fire)(미국법상의 유해한 화재=Hostile Fire 및 유용한 화재=Friendly Fire와 대조)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sup>8)</sup> 이 사건이후 영국에서는 원래 타서는 안될 것이 탔느냐의 여부가 판정기준이 되고 있다.<sup>9)</sup> 영국서는 불과 화재의 구별이 없다.

③ 미국에서의 화재의 개념은 영국과는 달리 유해한 화재(Hostile Fire or Unfriendly Fire)와 유용한 화재(Friendly Fire)로 구별하여, 전자만이 화재보험에서의 화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sup>10)</sup> 예를 들어 Mode Ltd. V. Firemen's Fund Ins., Co. 사건에서는 보석류를 잘못하여 휴지소각로에 넣어버린 것을 사용인이 모르고 점화함으로써 그것이 손상된 사건에 대하여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 경우의 피해는 "Friendly Fire"이기 때문이라 한다. 불과 화재를 구별하는 미국은 화재의 개념에 있어서 영국과는 대조적이다. 즉, 이곳에서는 본래의 용법에 따른 불이나의 여부가 그 기준으로 되어 있는 점에서, 타버린 물건이 원래 타서는 안될 물건인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영국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 4. 끝맺음

영·독·미의 화재의 개념을 위에서 간단하게 비교해

보았으나, 대체로 독일의 약관상의 개념이 무난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첫째 사건에서 발화(내지 인화)에 이르지 않는 과열로 인한 손해(예, 가구가 과열로 타거나 변색·변형된 경우)가 제외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실무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sup>11)</sup>

또 영국의 Harris V. Poland 사건이후의 경우처럼, 본래 불에 탈 것이 아닌 것이 탔느냐의 여부도 판정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것은 화재의 개념의 요소라고 하기보다는 보험자의 보상의 대상 내지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서의 의미가 큰 것으로 보여진다.

#### 【註】

- 1) 朴之善·새商法(下) 1962, 修学社 164면.
- 2) 徐燾珏·第三補訂 商法講義(下) 1984, 258면; 鄭茂東·商法講義(下) 1982, 83면.
- 3) 鄭熙喆, 全訂版 商法学原論(下) 1984, 89면; 金容泰, 商法(下) 1969, 59면; 孫珠璣·三訂商法(下) 1982, 94면; 崔基元, 新版商法学新論(下) 1984, 485면.
- 4) Albert Ehrenzweig, Deutsches (Österreichisches) Versicherungsvertragsrecht, 1952. S. 293ff.; Prölss/Martin, Versicherungsvertragsgesetz, 23. Aufl. S. 472. § 82 Anm. 2.
- 5) Willy Koenig, Schweizerisches Privatversicherungsrecht 3. Aufl. Bern 1968, S. 336ff.
- 6) Austin V. Drew (1815), 4. Camp. 360 (E. R. Hardy Ivamy, Casebook on Insurance Law, 3rd Ed. p. 124에서 引用).
- 7) Harris V. Poland [1941] 1 All E. R. 204 (E. R. H. Ivamy 前書揭 124~125면에서 引用). 이밖에 金子晔實, 「使用火, 非使用火の問題」 保險學雜誌 第411號 참조.
- 8) MacGillivray & Parkington, On Insurance Law, 7th. Ed. 1981, p. 778.
- 9) Welford & Qttter-Barry, The Law Relating to Fire Insurance, 4th. Ed. p. 59. 鈴木辰巳, 火災保險研究, 1978, 71면.
- 10) William F. Young, Cases and Materials on the Law of Insurance, 1971, pp. 560.
- 11) 田辺·石田·棚田·戸出, 註釈 火災保險普通保險約款, 1976, 81면(田辺康平)도 同. 